

보도자료

2010년 11월 15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안건]
가.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과장(2530) 나. 전파정책기획과 오상진과장(2210)
다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과장(2770) 라. 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박철순팀장(2750)
[보고안건]
가. 네트워크윤리팀 이상무팀장(2760)

2010년 제66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

[의결안건]

가. 「도매제공 대상과 조건, 절차,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」
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도매제공 대상을 지정하고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심의하여 의결함

< 고시 주요 내용 >

- (다량구매할인)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, 방통위는 SKT 및 MVNO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
※ 당초에는 SKT가 다량구매할인을 자율 적용토록 하였으나,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다량구매할인 개입 근거를 명확히 함
- (도매제공 대상) SKT의 이동통신서비스 중 음성, 데이터, 단문메시지를 대상으로 하되, 부가서비스는 사업자간 협상에 따름
- (자가소비 제한)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SKT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
- (이용약관 마련) SKT는 도매제공 대가, 단일 협상창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MVNO 사업자에게 공개
- (재제공(再提供) 제한)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SKT가 허용
- (대가산정 기준) MVNO 사업자의 설비보유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31% 44%를 할인하되, 구체적 대가수준은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

나.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('10.7.23 공포, '11.1.24 시행)에 따라, 관련 「전파법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

< 시행령 주요 내용 >

- **(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설정 등)** 헐값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최저경쟁가격은 주파수 대역 및 이용권의 범위, 동일 용도의 주파수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**(주파수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)** 방송통신위원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합의하여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고시에 위임
- **(무선국 검사제도 완화에 따른 기준 마련)** 검사대상 무선국 중 전파에 혼·간섭 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에 대해 표본검사를 적용
 - 표본비율은 검사대상 무선국의 30%로 하며, 불합격율이 표본의 15%를 초과할 경우 전수검사 실시
 - ※ 광중계기지국은 모기지국 등의 신호를 전송받아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기지국. 대상 무선국 약 4만9천국의 30%인 14,700국에 표본검사 적용시 검사수수료 약 40억원 절감 예상
- **(방송통신기자재 적합 인증·등록 대상)** 기자재 유형에 따른 기존의 인증제도 [형식승인(유선), 형식검정·등록(무선), 전자파적합등록(정보기기)]를 기자재의 방송통신시설과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등록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적합인증 및 등록 대상 기준 마련
- **(이동멀티미디어방송국(DMB) 보조국 허가규제 완화)** 전파 혼·간섭 우려가 없는 위성DMB보조국과 지하·터널 내에 개설되는 지상파DMB보조국의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개설하도록 전환
 - ※ 허가수수료 감면효과 : 지상파DMB 약 2억원(1,770국), 위성DMB 약 7억원(9,627국)

다.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「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PIMS) 인증제」를 심의하여 의결함

<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PIMS) 인증제 개념>

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·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
※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무엇을(what to do), 어떻게(how to do) 조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제시

라.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(안)에 관한 건

-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

[보고안전]

가. 2010년 스팸방지 종합대책(안)에 관한 사항

-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